

편집위원회 규정

2006년 11월 1일 개정

2009년 7월 23일 개정

2011년 1월 27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東亞法學의 편집·간행과 투고논문의 심사 등을 주관하는 동아법학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활동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의해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고, 연구소 간사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④ 운영위원은 편집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 3 조(편집위원의 자격)

- ①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장의 추천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법학분야에서 그 연구 성과가 뛰어난 법학연구자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최근 2년 동안 논문과 저서를 포함하여 500%이상의 연구실적을 갖춘 자로 한다. 연구실적의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100%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및 국제 전문학술지 단독논문, 서평 및 논평, 연구보고서, 번역서(2명의 공동번역의 경우 90%, 3명 이상의 경우 80%) 1편.
 - 300% : 전문학술 저서(2명의 공동저서인 경우 270%, 3명 이상의

공동저서인 경우 240%)

제 4 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편집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기획과 집행의뢰 및 동아법학·기타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 ② 東亞法學·기타 학술지에 수록할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
- ③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동아법학·기타 학술지의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과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등을 담당한다.

제 6 조(편집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출석에 의한 면대면 방식과 함께 서면 또는 이메일 등 통신회의도 할 수 있다.

제 7 조(논문심사규정) 東亞法學·기타 학술지의 간행, 투고 및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규정의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기타)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東亞法學의 편집·심사·간행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東亞法學 게재논문 심사규정

2006년 11월 1일 개정

2008년 2월 12일 개정

2009년 7월 23일 개정

2011년 1월 27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東亞法學의 편집·간행을 위한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신청한 각 논문에 관하여 각각 전공영역을 기초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 이외의 동일전공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심사의뢰 후 2주의 기간이 경과해도 심사자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 ④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신원은 원고투고자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

제 3 조(심사대상 논문)

- ① 심사대상논문은 東亞法學에 게재신청한 각 논문으로 투고기한까지 법학연구소에 제출된 원고로 한다.
- ② 법학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논문이나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평 등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일부의 심사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심사대상논문의 작성방법 및 분량과 투고기한 및 투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심사절차)

- 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규정, 투고된 논문의 원고, 심사위원 위촉문 및 심사결과통보서양식을 전송한다.
- ② 투고된 원고는 필자명을 익명으로 하여 총 3차의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심사논문의 본문이나 각주 항목에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한 내용은 수정하여 심사에 의뢰한다.
- ③ 본 연구소의 기획 및 학술발표회 원고의 1·2차 심사는 발표와 토론으로 대체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3차 심사만을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투고논문의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주제·분야·체제·형식·분량·논지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한다.
- ⑤ 일반 투고논문의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제5조의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각각 심사한다. 논문의 2차 심사는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2주내에 하여야 한다.
- ⑥ 2차 심사에서 심사결과가 상충되거나 투고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과정을 거친다.
- ⑦ 2차 심사의 경우 게재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⑧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결과통보서」(첨부양식1, 2)를 참조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제 5 조(심사기준)

- 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논문심사결과통보서」(첨부

양식1, 2)에 따라 심사한다.

1. 학계에의 기여도
 2. 연구내용 및 방법론의 독창성
 3. 논지전개의 타당성
 4. 논문구성의 완결성
 5. 자료인용의 적절성
 6. 문장표현의 정확성
- ② 기타 번역, 서평 및 판례평석의 심사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 번역, 서평 및 판례평석의 필요성
 2. 번역, 서평 및 판례평석의 완성도
 3. 번역, 서평 및 판례평석의 기여도
- ③ '자료'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자료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조(심사결과 판정)

- ①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는 2차 심사 회부여부만을 결정한다.
- ② 2차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다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1. 수정이 필요없이 게재가능할 때 : 게재가(A)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게재(B)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재심의뢰(C)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불가(D)
- ③ 심사위원은 전항 2, 3, 4호의 판정을 할 때에는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⑤ 수정후 게재(B)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 ⑥ 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게재여부판정기준」([표 1]의)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⑦ 3인의 위원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와 편집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서

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심사료)

동아법학 투고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법학연구소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조(심사결과와 통보 및 이의제기)

-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②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 이의서(A4 용지 3매 내외)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중 1인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에 한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를 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재심에 회부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에 의한 재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⑤ 전 항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⑥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정된 원고나 수정거부사유서가 7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논문의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수정후 재심)

- ①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재심원고를 송부한다.

- ②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 ③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 ④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10조(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규정의 개정)

- ① 심사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의 3분의 1의 발의에 의해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한다.

제12조(기타)

東亞法學의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표 1] 게재여부판정기준

A: 게재가 B: 수정후 게재 C: 수정후 재심 D: 게재불가

판정기준	심사기준			비 고
게재가능	A	A	A	게재 확정
	A	A	B	게재 확정
조건부 게재	A	A	C	수정을 권장하여 수정내용 확인 후 게재 확정
	A	B	B	
	B	B	B	
수정후 재심	A	B	C	수정후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능이면 게재
	B	B	C	
	A	C	C	수정후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 게재가능이면 게재
	B	C	C	
	A	A	D	이의신청→제3자 재심 or 편집위원회 결정
	A	B	D	
	B	B	D	
게재불가	C	C	C	게재불가
	A	C	D	
	B	C	D	
	A	D	D	
	B	D	D	
	C	C	D	
	C	D	D	
	D	D	D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5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우602-072)

Tel.051)200-8546 Fax.051)200-8548 E-mail: lawlab@donga.ac.kr

http://lawlab.donga.ac.kr

< 첨부양식1 >

동아법학 논문심사 결과통보서

논문제목			
심사의뢰 일 자	20	심사일자	20

1. 평가내용 :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많은 문제점이 있음

심 사 항 목	A	B	C	D
1. 학계에의 기여도				
2. 연구내용 및 방법론의 독창성				
3. 논지전개의 타당성				
4. 논문구성의 완결성				
5. 자료인용의 적절성				
6. 문장표현의 정확성				
7. 초록의 질적 수준				

2. 종합평가

A. 게재가	B. 수정후 게재	C. 수정후 재심	D. 게재불가

3. 두 항목 이상에서 D로 판정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심사 의견 및 수정사항과 심사결과에 대한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서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귀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5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우602-072)

Tel.051)200-8546 Fax.051)200-8548 E-mail:lawlab@dau.ac.kr

http://lawlab.donga.ac.kr

< 첨부양식 2 >

동아법학 논문심사의견서

논 문 제 목	
심 사 평	(심사소견은 ① 영역별 평가내용을 감안하여 게재여부와 연결되는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 및 의견과 ③ 투고 논문의 특징적장·단점 등에 대한 심사자의 소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④ 기타, 논문작성자가 이해하고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평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 사 일 자	20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성 명: (인) 소 속:
계 좌 번 호	은행명: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 ◆ 필요하신 경우 뒷면 혹은 별지를 추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논문심사 결과는 논문의뢰 날짜로부터 1일 이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東亞法學 간행규정

2006년 11월 1일 개정

2008년 7월 16일 개정

2009년 7월 23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東亞法學(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발행일자) 학술지는 연 4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자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제 3 조(발행부수)

- ① 학술지는 500부를 발행하며,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간행부수와 간행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간행형태)

- ① 학술지의 출판은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이 형태로 간행하며, 전자출판의 경우는 본 연구소와 외부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파일을 제공한다.
- ② 학술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를 제작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 부담하에 추가 제작할 수 있다.

제 5 조(발행재원) 학술지의 편집·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비와 게재료 및 기타 지원비로 충당한다. 심사 및 게재료에 대해서

는 <투고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6 조(게재예정증명)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요구에 의해 법학연구소장 명의의 게재예정증명서(첨부양식1)를 발급할 수 있다.

제 7 조(학술지 배포)

- ① 간행된 학술지는 교류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한다.
- ② 게재원고의 집필자에게는 동아법학 2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③ 게재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제②항의 배포분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 8 조(간행규정의 개정) 간행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기타) 학술지의 간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아법학 투고규정

2006년 11월 1일 개정

2008년 7월 16일 개정

2009년 7월 23일 개정

2010년 11월 12일 개정

2011년 1월 27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東亞法學(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투고자격)

①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및 법학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투고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투고가 제한된다.

제 3 조(투고원고)

①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1. 발표논문: 본 연구소 주최 학술모임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2. 일반논문: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투고된 논문
3. 기타 번역·평석 등: 동아법학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번역, 판례평석, 입법동향분석, 서평 등

②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법학 연구 및 교육 혹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의 원고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단 타 학술지에 일 부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 자에 의해 저작권협회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4.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내용의 원고일 것
- ③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전체분량은 동아법학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조(투고절차 및 방법)

- ①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외국어 제목,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및 국문 초록, 국문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원고 제출은 전자 우편(E-Mail)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 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별지로 제출한다.

제 5 조(투고기한)

- ① 원고의 투고마감일자는 東亞法學의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2월 전(각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으로 한다.
- ②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학술지의 간행예정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은 범위내에서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대상 논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 6 조(논문제출처)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와 투고논문의 원고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 주 소 : (602-072)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연구소(LS512)
- 이메일 : lawlab@donga.ac.kr
- 전 화 : 051-200-8546~7

· 팩 스 : 051-200-8548

제 7 조(심사 및 게재료)

- ① 학술지에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비(3만원 x 3인)를 납부해야 한다.
- ②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비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③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발간면수 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 1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 8 조(저작권)

- ① 학술지의 편자는 법학연구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 ② 연구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제 9 조(투고논문의 작성방법) 투고논문의 분량과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별첨하는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0조(투고규정의 개정) 투고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타) 동아법학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원고 작성 지침

1. 원고작성

- 1) 원고 매수는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A4 용지 20매 내외로 하되 30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는 A4용지 15매 이내로 한다.
- 2) 디스켓 1매(hwp 2.5이상)를 출력된 원고(3부)와 함께 제출한다.
- 3) 원고는 교정작업 및 편집작업 등 인쇄공정의 생략 및 정확도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제출자가 직접 편집하여 작성한다.
- 4) 투고자는 전산출력물을 이용, 완전한 체계를 갖추어 편집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손으로 쓴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5) 모든 원고는 일반적인 논문의 체계를 갖추되 원고의 체계는 I, 1, 가, (1), (가)의 순으로 사용하며 가급적 2단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편집방법

- 1) 논문제목, 저자명은 첫 표지에 쓰고 저자명은 상단에 *표를 달며,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 2) 논문은 다음순서대로 작성한다.
 - ① 논문제목(영문제목 포함)
 - ② 필자명
 - ③ 목차
 - ④ 본문

- ⑤ 참고문헌
 - ⑥ 국문초록과 한글 주제어
 - ⑦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 ⑧ 별지
- 3) 논문의 순서별 글자크기, 글자체,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논문제목**(영문제목 포함)은 글자크기 17P로 하고 정렬방법은 중앙으로 한다.
 - ② **저자명**은 글자크기 9.2P로 하고 정렬방법은 우측으로 하는데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주저자 · 공동저자의 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저자명은 우측상단에 *표를 달며, 원고지 하단에 소속대학, 학과, 직위를 명기한다.
 - ③ **목차**는 본문의 목차와 동일하게 <목차>로 정리하여 저자명 다음에 기재하는데 가급적 2단계까지만 기재한다.
 - ④ **본문**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i) 원고본문의 목차순서는 다음과 같다.
 - I. (로마자숫자) : 글자크기는 11.3P로 한다.
 - 1. (아라비아 숫자) : 글자크기는 10P로 한다.
 - 가. (한글)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 (1) (괄호숫자)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 (가) (괄호 한글) :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 ii) 본문의 글자크기는 9.5P로 하며 정렬방법은 양쪽혼합을 하고 줄간격은 170%로 한다.
 - iii) 본문중의 각주는 글자크기 7.1P로 하고 정렬방법은 양쪽혼합으로 하며 줄간격은 135%로 하되 각주의 인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거나 일반학술논문의 관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
 - ㉞ 저서인용시
 - ㉠ 저서인용시에는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으로 한다.

- ㉞ 한국, 일본, 중국의 저서일 경우, 책명을 『』으로 표시한다.
- ㉟ 영어 및 독일어 등의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예)

- 김○○, 『법학개론』, 세종출판사, 2005, 100면/100쪽/p. 100/pp. 100-112.
- 星野英一, 『民法概論Ⅱ』, 良書普及會, 1964, 264면/p. 264/
- Grant Gilmore, *The Death of Contract*,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4, p. 100.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 인용시

-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논문인용시,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거나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한다.

예)

- 김○○, “近代韓國에 있어서 日本憲法理論의 影響”, 東亞法學, 제38호, 2006.6, 28면.
- 김○○, 「近代韓國에 있어서 日本憲法理論의 影響」, 東亞法學, 제38호, 2006.6, 28면.

- ㉡ 영어, 독일어 등의 외국잡지일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 년월, 면수의 순으로 하거나 논문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 Michael L. Rustad, “The Closing of Punitive Damages’Iron Cage”, 38 Loy. L.A. L. Rev. 1927.
- Michael L. Rustad, *The Closing of Punitive Damages’Iron Cage*, 38 Loy. L.A. L. Rev. 1927.

㊤ 판례인용시

- ㉢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법원공보’나 ‘대법원판결요지집’

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예)

- 대법원 1987.8.7. 선고, ○○다○○○판결
- 대판1987.8.7, ○○다○○○

- ⑤ **참고문헌**의 글자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하고 순서는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순으로 하는데,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 동양문헌은 그 나라 발음의 알파벳 순으로, 서양문헌은 발음에 관계없이 알파벳 순으로 한다.
- ⑥ 게재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한글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작성하되 논문제목과 저자명도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게재원고가 외국문인 경우에는 본문과 동일한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및 **국문초록과 한글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⑦ 별지에는 저자명(괄호 안에 한자성명표기), 소속, 직위, 연락처(근무지, 전자우편과 전화번호)을 기입한다.

- 4) 용지의 여백 : 상·하 53mm, 좌·우 50.5mm, 머리말 14mm, 꼬릿말 14m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2009년 7월 2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동아법학』 및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이하 Dong-A JIBTL라 함)의 논문게재에 대한 연구자(이하에서는 ‘논자’라 칭함)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심사과정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임원, 구성원, 심사자 및 논문투고자에게 적용된다.

제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목의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의미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선행연구의 내용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에 왜곡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학설,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당해 연구에 직

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③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제시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예비적 절차를 말한다.
- 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 ⑦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연구소에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공정한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권한) 위원회는 연구소의 임원, 구성원 및 논문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 조(구성)

- 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은 본 위원회의 연구윤리위원이 된다.
- ② 『동아법학』 및 『Dong-A JIBTL』의 편집위원은 연구윤리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7 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결위, 사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연구성과물 등의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위원회의 직무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8 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 등의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다.
-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익명제보도 할 수 있다.
- ③ 제보자는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의 내용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연구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보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소명이 현저하게 부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비조사)

- ①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본 조사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검증을 위한 진실성, 구체성, 명확성을 갖추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 후 6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부적절행위의 혐의사실과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 3.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 조사)

-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 조사의 판정은 조사개시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⑤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출석요구 및 증거보전)

- ①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 조사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으로써 피조사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 ①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 및 직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피조사자인 경우 또는 피조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2. 위원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판정)

- ① 본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② 본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하며,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전조 제2항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 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심사윤리 검증

제19조(심사위원의 준수 의무)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논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심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심사위원이 논문심사 시에 제4조 ②나 ③을 위반할 경우, 부위원장은 그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한다.

- ② 심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부위원장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위①의 위반여부는 부위원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④ 심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본 학회지의 논문심사를 3년 이상 할 수 없다.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인용판정이 있는 경우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1. 논문의 게재취소
 2.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관계 기관에의 통보
 4.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 ② 전항 제2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투고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본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는 재심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직무와 판정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3조(명예회복 및 후속조치) 재심의결과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등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관계된 정보는 판정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

제2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아대학교 연구윤리검증및처리에관한규정 및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장 이 종 근(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위원 강 주 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세 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상 명(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혜 진(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 병 일(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한 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동 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상 균(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상 필(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 태 영(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귀 현(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가나다순>

東亞法學 第56號

2012년 8월 25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권 오 창
편집인 이 종 근
발행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5(부민동2가)
TEL. (051) 200 - 8546
FAX. (051) 200 - 8548
인쇄처 세 중 문 화 사
부산시 중구 보수동 2가 72-26
TEL. (051) 463 - 5898
FAX. (051) 248 - 4880